#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모경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74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모경종ㆍ이용우ㆍ민병덕

김현정 · 김한규 · 황정아

박범계 • 김 윤 • 김동아

송재봉 · 남인순 · 김교흥

정진욱 • 이준석 • 이광희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,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.

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,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.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·군·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그

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1항제10호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975호) 및 「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7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제10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폐기물: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4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 ①	제34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 ①		
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			
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			
성립한다.		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	
10. 지역자원시설세	10		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사. 폐기물: 폐기물매립시설		
	에 매립하는 때		
<u>사.</u> (생 략)	<u>아.</u> (현행 사목과 같음)		
11.・12. (생 략)	11.・12. (현행과 같음)		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